

#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

| 경상남도 | 세 정 과(☎055-221-3714)  
| 함 양 군 | 재 무 과(☎055-960-4330)

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 
부과하는 2021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해 드립니다.

## ▶ 지원대상

-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에서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의 1)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및 4)그 밖의 법인[세액 50,000원 적용 대상 법인]
-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,800만원 이상인 사업주

## ▶ 지원내용

- (감면세목) 2021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
- (감 면 율) 50% 감면
- ※ 자세한 감면내역은 군 조례 개정 후 홍보

## ▶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

- (과세년월) '21. 8월
- (감면방법)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대상 법인 및 개인에게 일괄 감면
- (신청서류) 없음

[관련법령]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,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